

한국수산물무역협회 공고 제2025-1호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2호(2025.1.2.)에 따라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한국수산물무역협회 회장

2025년 1월 8일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 세부요령

제1조(목적) 본 세부요령은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2호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이하 “해양수산부 공고”라 한다)에서 한국수산물무역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에 따라 할당관세 물량의 추천 및 수입관리 등을 원활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등) 품목별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추천대상자, 적용 기간은 별표와 같다.

제3조(물량 배정) ① 할당관세 추천 대상 품목과 해당 품목별 할당관세율, 한계수량 등은 해양수산부 공고에 따른다.

② 협회는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라 할당관세 물량 배정을 위해 신청자격, 상세 도입기간, 업체당 배정한도물량, 할당관세 적용 추천 신청기간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추천기관은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으려는 자(이하 “추천 대상자”라 한다)에게 신청물량 한도 내에서 제1항의 한계수량을 선착순 배정 또는 균등비율 등의 방식으로 공고를 통해 배정할 수 있다.

④ 협회는 추천신청이 한계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남아있는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신청물량 일부만을 배정할 수 있으며, 한계수량이 소진된 경우, 조기에 추천을 종료할 수 있다.

제4조(배정 자격 및 배정 제외) ① 협회는 해양수산부의 지시에 따라 공급 목적이나 수입실적, 시설규모, 생산계획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로 배정을 제한 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는 배제통보일 다음날로부터 1년간 협회에서 추천하는 할당관세 신청(수입대행 또는 공급계약을 포함한다)에서 배제할 수 있다.

1. 추천서류를 허위로 제출하는 등 부당한 방법으로 추천 신청을 한 자
2. 정해진 기한까지 배정받은 물량의 전체 또는 일부를 수입하지 않거나 판매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자. 다만, 할당물량을 반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추천 물량을 용도 외로 사용하여 관세법, 수산물 유통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
4. 추천 물량과 관련하여, 대외무역, 식품위생 및 수산생물질병 관리, 원산지 표시, 수산자원관리 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자
5. 기타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현장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자

제5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 등) ①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협회에 신청해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 영업신고증) 각 1부
3. 선적서류(선하증권(B/L) 또는 항공운송증권(AWB),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사본 각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해당하는 경우)
5.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6.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준수 협약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7. 시장공급계획서(별지 제8호 서식) 1부(해당하는 경우)
8. 기타 공고로 지정한 서류

② 협회는 추천 대상자가 제출한 제1항의 신청서류 및 물량 등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경우, 접수 순으로 근무일 2일 이내에 할당관세적용추천서(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며, 이 때 접수일시는 업체가 제출한 서류가 완비된 때로 한다. 다만, 추천신청이 한계수량을 초과하는 경우 남아있는 한계수량 범위내에서 신청물량 일부만을 배정할 수 있다.

제6조(추천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며, 추천서의 수입신고수리 기한은 해당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추천서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일은 제2조의 적용기간 또는 제3조의 도입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③ 추천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서의 유효기간 만료 7일 전까지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유효기간 연장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 발급한 추천서를 회수하고 유효기간이 연장된 추천서를 재교부한다. 이 경우 유효기간의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가능성이 있는지, 제2조의 적용기간 또는 제3조의 도입기간을 경과할 수 없다.

제7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 상의 할당물량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협회는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신청 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추천서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협회에 반납해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전체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및 판매) ①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 물품을 추천서에 기재된 수입신고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 통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장에 공급하여야 한다.

②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해당 물량의 수입통관 수리 후 5일 이내(추천기관 근무일 기준)에 해당 추천서가 적용된 수입이행실적 증빙을 추천기관이 공고한 방법으로 제출해야 한다.

③ 물가조정 목적으로 공급하는 품목을 할당관세 추천 받은 자는 수입 통관 이후 할당관세 물량을 시장에 공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추천물품 판매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협회는 통관 현황, 시장 판매현황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필요시 현장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④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적용 품목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는 경우 그 내용을 추천기관에 즉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위임) 협회는 본 세부요령에 관련된 사항을 협회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위임할 수 있으며, 전결권자는 위임받은 사항을 해양수산부 공고 및 협회의 세부요령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5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타사항) 본 요령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관세법 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2호)」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호		품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적용기간
호	소호							
0301		활어						2025.1.1~ 2025.12.31 (수입신고 필증상의 수입신고 수리일 기준)
0301	9	그 밖의 활어						
0301	92	뱀장어[양귀라(Anguilla)종] 2.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 그램을 초과하고 50그램 이하인 것으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3	50 메트릭톤	한국수산 무역협회	허가(해면어 업) 또는 신 고(내수면어 업)가 수리 된 양식어업 인	※수입신고 수리일이 2025.12.31을 도과할 수 없음

접수번호								처리기간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사: (HP:)				전화번호	회사: (HP:)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kg)	금 액 (USD)	수입국	수입신 고 예정일	보 세 구 역 반출 예정일	관매 완료 (예정)일	용 도	
「관세법」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해양수산부 공고 제 2025-2호에 따라 할당관세 추천을 받으려고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① 선하증권(B/L, AWB)사본 1통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그 밖에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음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호								
전 화 번 호	회사: (HP :)				회사: (HP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kg)	금 액 (USD)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판매완료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5124호)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인)								
※ 본 추천서는 추천유효기간까지 사용하고,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예정일 및 판매완 료(예정)일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향후 추천에서 배제되는 등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으니 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35124호) 및 해양수산부 공고 제2025-2호에 따라 위와 같이 추천함.

20 년 월 일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인)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회사 : (HP:)				회사 : (HP :)			
팩스번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 및 단위 (kg)	금 액 (USD)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 일	판매 완료 (예정)일	용 도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해양수산물부 공고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청인 (인)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신청일 발행분) 첨부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시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								
신청인	①상호		(인)					
	②주소							
	③대표성명							
④신청내용 : 신청사유								
⑤세번부호(HS)	⑥품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초 추천량	⑨추천수량의 분할내용(추천량, kg)				
				1	2	3	4	5
해양수산부 공고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 . . . 신청인 (인) *인감 날인 후 인감증명서(신청일 발행분) 첨부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귀하								
구비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할 당 관 세 적 용 분 할 추 천 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

③ 주 소

④ 대표성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명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당 초 추 천 량	추천수량의 분할(추천량, kg)				
					1	2	3	4	5

○ 유효기간 만료일 : 20 . . .까지

해양수산물부 공고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 . . .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는 할당관세적용 추천 및 수입관리 업무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거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할당관세적용 추천신청자(수입자 포함) 및 추천품목에 대한 관리
- 판매 및 가공실적 분석 및 유통실태 등 현황 파악 활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필수항목	신청인(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수입자(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항목	대리인(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판매·생산 실적(판매가격, 판매처, 판매량, 생산 실적, 재고현황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준영구

4.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할당관세 적용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집·이용된 개인정보는 위의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정보주체가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통해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침해 시 개인정보처리방침 제8조(권익침해 구제방법)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5 제3자 제공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에 의거, 수집목적 내에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제3자 제공기관 : 해양수산물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국회, 감사기관
- 제3자 제공목적 : 판매실적 분석 및 유통실태 연구 활용
- 제3자 제공항목 : 신청인/수입자(상호, 주소, 대표성명,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 제3자 제공기관의 보유·이용기간 : 준영구
- 제3자 제공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 서비스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상호명 :

대표자 :

(인/서명)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귀하

할당관세추천 세부요령 준수 협약서

당 사는 해양수산부 소관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및 세부요령 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이행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 및 관계 기관 또는 추천기관(한국수산물무역협회)에서 당사 할당관세적용 수입품목에 대해 판매실적(가격, 판매처, 판매량, 재고량), 자사제품 가공실적, 보관창고 현장 확인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며, 관계 법령 위반 시 민·형사상 조치에도 이의 없음을 동의 합니다.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직인, (사용)인감

20 년 월 일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귀하

시장공급계획서			
① 상호			
② 대표성명		③ 주소	
④ 세부계획	(할당물량 용도 및 사용 계획)		
⑤ 품명			
⑥ 판매처/용도	(판매업체 형태(도/소매업 또는 제조업 등))		
⑦ 국내 공급가격			
위와 같이 시장 판매 계획서를 제출함 업 체 명 : 대표자명 : (인) *직인, (사용)인감 20 년 월 일 (사)한국수산물무역협회장 귀하			